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77 발의연월일: 2024. 12. 6.

발 의 자:이원택·주철현·김성환

신영대・김영호・김 윤

문대림 • 서미화 • 조인철

박희승 • 허성무 • 박상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해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엄의 유지와 해제에 관한 절차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 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엄의 유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작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가 요구됨. 특히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은 계엄 해제의 즉시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계엄의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적 지연을 방지하고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법률 제 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생 략)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	2
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	
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다만,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의
	결한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 심의 없이 즉시 계엄을 해
	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